

# 의학전문대학원학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가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조에 의거 설치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및 학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및 목표)**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박애, 봉사, 애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사회가 필요로 하며,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을 교육목표로 한다.

1. 마음이 따뜻한 의사(Attitude)
2. 할 줄 아는 의사(Skill)
3.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의사(Knowledge)
4. 인류에 봉사하는 의사(박애)
5.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사(봉사)
6. 의과학발전에 기여하는 의사(애국)를 양성하는 것이다.

**제3조(교육조직)** 전문대학원에는 기초의학, 응용기초의학, 임상의학의 교육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둔다.

## 제2장 과정 및 정원

**제4조(학위과정)** ①대학원에는 의무석사학위과정을 두며, 이 학위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합한 석·박사통합과정(MD-Ph.D.) 등 '복합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08.10., 2013.05.31)

②석·박사통합과정(MD-Ph.D.)등 복합학위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8.10., 2013.05.31)

**제5조(입학정원, 학과, 학위종별)** ①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및 학과 또는 전공별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10, 2013.05.31)

2-3-1~2 제2편 학 칙

학과	과정	정원	학위종별
의학과	의무석사 과정	40	의무석사 (MD. MMSc.)
	석·박사 통합과정	의무석사 과정 정원에 포함	의과학박사 (MD-Ph.D.)

②석·박사통합과정(MD-Ph.D.)의 정원은 의무석사학위과정 정원 내에서 선발 하되, 해당 과정 중 박사학위과정으로 진입 시 일반대학원 정원으로 운영한 다. (개정 2012.08.10., 2013.05.31)

**제3장 수업연한 · 재학년한**

**제6조(수업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의무석사학위과정은 4년(8학기)으로 하 고, 복합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따로 정한다.

**제7조(재학년한)** ① 대학원의 재학년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 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의무석사학위과정 : 6년
  2. 복합학위과정 : 별도로 정한다.
- ②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재학년한을 초과한 경우 별도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년한을 1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여 재학할 수 없다.

**제4장 학년 · 학기 및 수업일수**

**제8조(학년, 학기의 운영)** ① 학년 및 학기의 운영은 본교 학칙의 규정을 따르 되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분기제 또는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운영 상 필요한 때에는 본교 학칙의 규정 에 의한 학기 개시일 전이라도 개강할 수 있다.
- ③ 복합학위과정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입학 및 재입학**

**제10조(입학 및 전형원칙)** ①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② 신입생은 일반전형에 의하여 선발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지원자격)** ① 대학원 입학전형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당해 연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하여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로 하며, 선수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② 복합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의 입학지원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③ 기타 입학에 필요로 하는 지원 자격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 입시요강에 의한다.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둔다.

③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 절차)**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입학 원서(소정양식)
2. 수험료납입증명서(소정양식)
3. 기타 대학원이 지정하는 서류

② 복합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이미 제출된 입학 지원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본 대학원의 제적자에 대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이중학적 보유 및 재학년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은 제적 당시 학년 이하로 하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의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이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입학의 취소)** ① 입학허가를 받은 후에도 법령의 위반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2-3-1~4 제2편 학 칙

② 입학이 취소된 자의 학적은 무효로 하고, 본교에 제출된 서류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장 등록·수강 및 휴학·복학·자퇴·제적

**제16조(등록과 수강)** ① 입학생과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에 대학원이 지정하는 서류 제출과 함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휴학과 복학)** ① 질병·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3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유급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휴학기간은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휴학생은 휴학사유가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에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⑤ 재입학 및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⑥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임신·출산·육아 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며,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원생은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제18조(자퇴학)**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형 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5. 재학기간 중 통산 3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자

### 제7장 교과이수·성적 및 학점

**제20조(수강신청)** ① 대학원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외에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①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학점)**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6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2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

**제23조(수료인정)** ① 대학원의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 또는 복합학위과정(M.D-Ph.D)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대학원의 각 학년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년 40학점 이상
2. 제2학년 80학점 이상
3. 제3학년 120학점 이상
4. 제4학년 160학점 이상

③ 복합학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성적)** ① 성적은 시험·출석·과제·학습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교과목에 따라 논문, 연구 보고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교과목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여야 성적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성적의 평점평균은 등급으로 평정되는 교과목별 평점의 평균으로 한다.

④ 성적은 교과목별로 다음과 같이 등급으로 한다.

2-3-1~6 제2편 학칙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sup>+</sup>	4.3	C	2.0
A	4.0	C <sup>-</sup>	1.7
A <sup>-</sup>	3.7	D <sup>+</sup>	1.3
B <sup>+</sup>	3.3	D	1.0
B	3.0	D <sup>-</sup>	0.7
B <sup>-</sup>	2.7	F	0.0
C <sup>+</sup>	2.3		

④ 대학원은 D<sup>-</sup>이상을 급제로 하며, 등급으로 평정할 수 없는 교과목은 'P' (급제) 또는 'F'(낙제)로 평가하며,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한 학기 중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

⑦ (삭제 2012.08.10)

**제25조(과정수료)** ①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학년말로 한다.

② 대학원은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제8장 시험·유급 및 졸업

**제26조(시험)** 시험은 정기시험·추가시험 및 재시험으로 구분한다.

**제27조(추가시험)**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교과목 교육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추가시험의 성적은 취득성적의 9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재시험)** ① 재시험은 교과목 교육담당교수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교과목 또는 전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시험으로 취득한 성적은 해당 교과목의 정기시험 성적 중 가장 낮은 성적 이하이어야 한다.

**제29조(유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유급을 처분할 수 있다.

1. 당해 학기 또는 학년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이 있는 자
2. 당해 학기 또는 학년에 평점평균이 1.7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의해 유급된 자는 유급된 학기 또는 학년의 전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30조(졸업)**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60학점이상으로 하며, 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누계 평점평균 2.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계 평점평균이 2.0미만인 자는 재학 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혹은 학년 단위로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각 과정의 학위를 취득한 학생만이 졸업할 수 있다.

④ 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장 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31조(학위취득 자격)** 제30조의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취득 자격을 갖는다.

**제32조(학위종류)** 학위의 종류는 제5조(입학정원, 학과, 학위종별)의 표와 같다.

**제33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각 과정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인정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② 복합학위과정 학위 수여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학위증서는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34조(의결 및 승인)** 학위수여 여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제35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연1회로 하며, 매년 2월에 행한다.

**제36조(학위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영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장 특별과정 및 외국인·특별학생

**제37조(특별과정)** ①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를 위하여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 동 과정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력고사 또는 면접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 2-3-1~8 제2편 학 칙

사용능력이 수학가능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학생이 수학할 수 있는 과정(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전공· 정원· 수학기간· 교과이수 및 수강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자에게는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험의 수준은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실력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다. 다만, 국내의 공인 한국어 훈련기관의 수료증 소지자에게는 한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특별학생)** ① 특별학생은 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니면서 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② 총장은 해외거주 교포 및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의과대학을 1년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여 특별학생으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특별학생으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 성적증명서 및 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④ 특별학생의 수학년한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학생의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1장 장학금·학생연구지원 및 학생자치활동

**제40조(장학금)** 대학원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할 수 있다. 시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납입금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3.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
4. 법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5. 기타 장학금지급세칙에 정한 자

**제42조(지급절차)** 장학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연구지원)** ①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학술연구진흥을 위하여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보조비의 지급대상자·지급액·지급방법 및 지급정지 기타 필요한 사



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44조(학생활동)** ① 학생자치활동은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훈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자치활동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 제8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동 규정 중 ‘소속대학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제12장 직제 및 위원회

- 제45조(직제)** ① 대학원에 두는 조직은 법인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른다.
- ② 학과 또는 전공에는 각각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주임교수 1인을 둘 수 있다.
- 제46조(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 및 각 부장과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소집하고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학·수업·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장단기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4.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과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7조(제위원회)** ① 대학원 학사운영과 교육활동에 관한 대학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8.02.22.)
1. 의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

2-3-1~10 제2편 학 칙

2. 의학전문대학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3. 발전위원회
4. 교육기획위원회
5. 질관리위원회
6. 도서정보위원회
7. 임상실습위원회
8. 통합교육위원회
9. 기초의학위원회
10. PBL위원회
11. (삭제 2013.05.31)
12. 국시대책위원회
13. 국제협력센터운영위원회
14. 연구위원회
15. 윤리위원회
16. 의무석사논문관리위원회
17. 학생지도위원회
18. 기숙사운영위원회
19. 장학위원회
20. (삭제 2013.05.31)
21. 건강관리위원회
22. 정보위원회
23. 석·박사통합과정(MD-Ph.D) 운영위원회
24. (삭제 2013.05.31.)
25. OSCE(임상수기평가) & CPX(진료항목평가) 위원회 (신설 2013.05.31)
26. 의학교육연구위원회 (신설 2013.05.31)
27. 환자의사사회교육위원회 (신설 2013.05.31.)
28. 학습성과 평가위원회 (신설 2018.02.22.)
29. 공간조정위원회 (신설 2018.02.22.)

② 제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주임교수 및 전체교수회의) ①대학원의 교육발전과 그 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임교수회의와 전체교수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주임교수회의와 전체교수회의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장 학칙 개정 절차

**제49조(학칙개정)** 학칙 개정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05.31)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통합전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학칙 및 의학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정 등의 규정을 따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입학정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입학정원은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로 진입하는 직전 학년도(2015학년도)까지는 40명으로 하고,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로 진입하는 학년도(2016학년도)부터는 학·석사통합과정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로 진입하는 학생수를 포함하여 40명으로 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 의무석사학위기

### 학 위 기

석 제 호

성 명 :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의무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학위)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가천대학교 총장 (학위) ○ ○ ○

학위등록번호 : 가천대 (석) - 호

(별지서식 제2호)

## 의과학박사학위기

### 학 위 기

박 제 호

성 명 :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의과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학위)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의과학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가천대학교 총장 (학위) ○ ○ ○

학위등록번호 : 가천대 (박) - 호